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이병운 의원 외 38명

나. 의안번호 : 제1715호

다. 제출일자 : 2024. 4. 3.

라. 회부일자 : 2024. 4. 8.

2. 제안사유

- 천재지변, 재해, 재난,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작성 및 자문회의 상정 예외 조항 부재
- 도로공사장에 대해 자문회의 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정명령 후 시정 조치 미시행시에만 과태료 등 행정 조치 가능
- 일부 공사장에서 공사편의를 위해 교통소통대책 미이행후 시정명령 후에만 보완하는 사례 발생

-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교통소통대책 미시행 경우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업무절차 개선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한 소통개선대책 준수책임 강화

3. 주요내용

- 가.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함.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안 제4조제5항)
- 나. 시장은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1항)
- 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12. ~ 2024. 4. 16.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생략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중대한 교통소통대책을 미이행 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음

1) 교통운영과-5730호(2024. 4. 18.)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와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관련(안 제4조)

- 현행 조례에서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시행자가 도로점용허가²⁾를 신청하기 전 공사와 관련된 교통소통대책³⁾을 수립하여 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도 같다.

3)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 4. 공사방법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의 예외로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이 시행자에게 교통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긴급 상황시 공사를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단서 조항⁴⁾에서 천재지변 등 긴급복구공사는 교통소통대책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개정을 통해 긴급한 공사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시장의 조치(안 제10조)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교통소통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도로점용 공사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⁵⁾한 경우에 가능한 바,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도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⁶⁾에서 심사한 교통소통대책을 공사시행자가 미이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시정명령⁷⁾을 내린 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별첨1 참조]
- 하지만, 일부 공사장에서 공사 편의를 위해 교통소통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도로관리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난 후에야 이를 보완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조목을 “시정명령”에서 “시장의 조치”로 개정하고, 기존 시정명령 외에 「도로법」 제97조제1항⁸⁾을 근거로 자문회의 최종결과를 공사시

5)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7)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8)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자에게 통보하는 단계에서 준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별첨2 참조]

■ 위반자에 대한 조치(안 제11조)

- 서울시는 교통소통대책을 지키지 않는 공사시행자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시키려 준비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 위반 관련 경미한 사안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9)에 따라 기존 시정명령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의 사안은 준수명령을 통해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10)에 따라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며 위반에 대한 경중의 판단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별첨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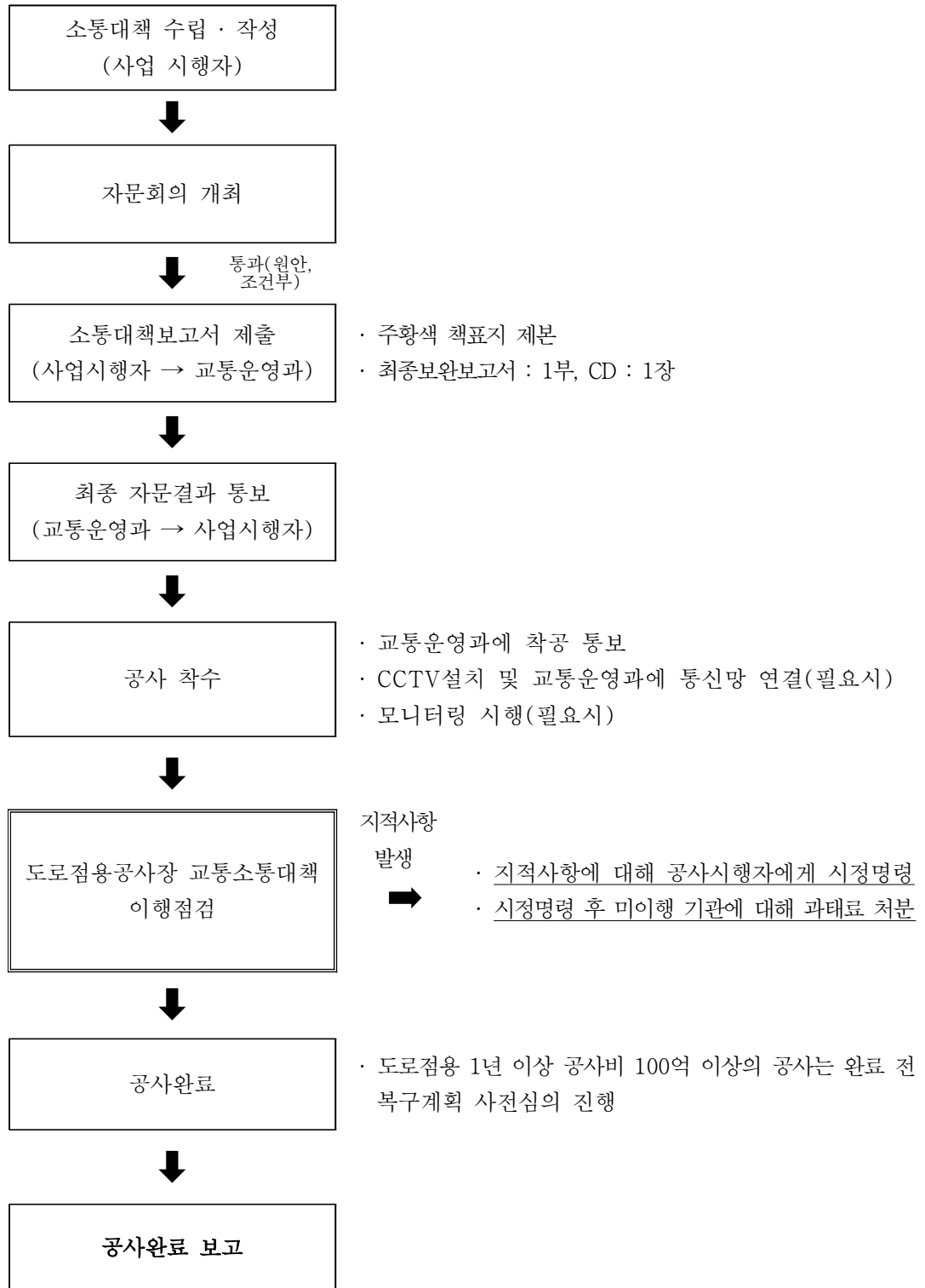
-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10)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참고 : 「도로법 시행령」 _[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파.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 따라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예외로하고, 교통소통대책을 미이행하는 공사시행자에게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도로점용공사장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면제하여 긴급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행 점검시 공사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 미이행에 대한 경미 또는 중대한 사항을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이며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사시행자 등 관련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별첨 1] 교통소통대책 수립 업무절차



[별첨 2] 교통소통대책 수립 업무절차(개선 안)

밑줄 : 개선(안)

